

| | |
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
| 의안번호 | 제 187 호 |
| 의 결 연 월 일 | 2011년 6월 일 (제 301회) |

**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**

| | |
|-------|--------------|
| 발의자 | 김재종 의원외 6명 |
| 발의연월일 | 2011년 6월 15일 |

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| | |
|------------|-----|
| 의 안 번 호 | 187 |
|------------|-----|

발의연월일 : 2011년 6월 15일
 발의자 : 김재종, 김영주, 박문희,
 정현, 김동환, 이광희,
 장병학

1. 제안이유

- 교육·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인 교육감에 대한 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관련 조문을 신설하고자 하며
-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 개정으로 충청북도교육위원회가 2010년 8월 31일자로 폐지됨에 따라, 충청북도교육위원회에서 교육·학예에 관한 사무 기관에 감사 또는 조사를 실시한 후 의회 보고하던 단서 조항을 삭제 하려는 것임.

2. 주요골자

- 교육·학예 관할 사무에 대하여는 “도지사”를 “교육감”으로 본다를 신설(안 제1조의2)
- 폐지된 충청북도교육위원회에서 실시하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대한 의회 보고 단서 조항 삭제(안 제5조제1항제3호)
-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

3. 개정조례안 : 별첨

4. 신구조문 대비표 : 별첨

5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별첨
- 예산조치 : 해당없음
- 규제관련사항 : 해당없음
- 입법예고 여부 : 해당없음

충청북도조례 제 호

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.

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41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52조에 따라 충청북도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1조의2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조의2(교육·학예에 관한 사무와의 관계) 이 조례에서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 제2조의 교육·학예 관한 사무에 대하여는 “도지사”를 “교육감”으로 본다.

제2조제1항 중 “의회는”을 “충청북도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는”로 하고, “감사를”을 “행정사무감사(이하 “감사”라 한다)를”으로 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조사를”을 “행정사무조사(이하 “조사”라 한다)를”으로 한다.

제5조제1항제2호 중 “법 제113조 내지 제115조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「지방자치법」(이하 “법”라 한다) 제113조부터 제1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”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 중 “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제121조에 따라”로 하며, 단서 규정을 삭제하고, 같은 항 제4호 중 “제146조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146조에 따른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5호 중 “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제3항에 따라”로 하고, 같은 항 제6호 중 “제77조의3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77조의3에 따른”으로 한다.

제10조제1항 중 “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제43조제4항에 따라”로 하고, 제2항 중 “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”를 “도지사”로 한다.

제11조제3항 중 “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제9조제1항에 따라”로 한다.

제12조제1항 중 “제6조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6조에 따른”으로 하고, “제2조 내지 제10조 및 제12조 내지 제20조의”를 “제2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2조부터 제20조까지의”로 하고, 제2항 중 “후단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후단에 따라”로 한다.

제13조 중 “단서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단서에 따라”로 한다.

제14조 중 “기타의”를 “그 밖의”로 한다.

제16조제2항 중 “당해”를 “해당”으로 하고, 제3항 중 “당해”를 “해당”으로 한다.

제19조제3항 중 “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제2항에 따라”로 한다.

제20조 중 “제16조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16조에 따른”으로 하고, 제17조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17조에 따른”으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|---|
| 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<u>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52조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 도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(이하 “감사”라 한다)와 행정사무조사(이하 “조사”라 한다)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.</u></p> <p>(신 설)</p> <p>제2조(감사) ① <u>의회는</u> 도의 행정사무 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<u>감사</u> <u>를</u> 행한다. 다만, 본회의의 의결로 감 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를 행 할 수 있다. ② ~ ⑤ (생략)</p> <p>제3조(조사) ① <u>의회는</u>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도의 행정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<u>조사를</u> 행할 수 있다. ② ~ ⑦ (생략)</p> <p>제5조(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)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(생략) 2. <u>법 제113조 내지 제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령 또는 충청북도조례로 설 치한 충청북도의 직속기관, 사업소</u> | 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<u>제41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52조에 따 라 충청북도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 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절차 그 밖 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u></p> <p>제1조의2(교육·학예에 관한 사무와의 관계) 이 조례에서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 제2조의 교육·학예에 관한 사무에 대하여는 “도지사”를 “교육감” 으로 본다.</p> <p>제2조(감사) ① <u>충청북도의회(이하 “의 회”라 한다)는</u> ----- <u>행정사무</u> <u>감사(이하 “감사”라 한다)를</u> ----- ----- ----- ② ~ ⑤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3조(조사) ① ----- ----- ----- <u>행정사무조사(이하 “조사”라 한다)를</u> ----- ② ~ ⑦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5조(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) ① ----- ----- <u>1. (현행과 같음)</u> <u>2. 「지방자치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13조부터 제1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</u> -----</p> |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|---|
| 3. 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교육·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. 다만, 그 감사 또는 조사는 교육위원회가 실시하고 의회에의 보고로 갈음하되, 의회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는 경우 특정사안에 대하여 감사 또는 조사를 할 수 있다. | 3. 법 제121조에 따라----- ----- <단서 삭제> |
| 4. 충청북도가 설치한 법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기업 | 4. ----- 제146조 에 따른----- |
| 5. 법 제104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(지방자치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다)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. 다만,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한다. | 5. ----- 제3항에 따라----- ----- ----- ----- |
| 6.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·지방공단외의 출자·출연법인중 충청북도가 4분의 1 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.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충청북도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, 회계, 재산에 한하여 실시한다. | 6. ----- 제77조의3에 따른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|
| 제10조(과태료의 부과기준) ① 법 제41조제5항 및 영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감사 또는 조사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. ② 제1항의 과태료는 의장의 불출석 또는 증언거부사실 통보 등에 의하여 충청북도지사(이하“도지사”라 한다)가 부과 징수한다. | 제10조(과태료의 부과기준) ① ----- ----- 제43조제4항 에 따라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② ----- ----- ----- 도지사가 ----- |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|--|
| <p>제16조(제척과 회피) ① (생 략)</p> <p>② 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의원이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<u>당해</u> 의원의 감사 또는 조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.</p> <p>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<u>당해</u> 의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.</p> <p>④ (생 략)</p> | <p>제16조(제척과 회피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<u>해당</u>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③ ----- <u>해당</u> ----- -----</p> <p>④ (현행과 같음)</p> |
| <p>제19조(감사 또는 조사보고에 대한 처리)</p> <p>① ~ ② (생 략)</p> <p>③ 도 또는 해당기관은 <u>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</u> 시정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</p> | <p>제19조(감사 또는 조사보고에 대한 처리)</p> <p>① ~ ② (생 략)</p> <p>③ ----- <u>제2항에</u> <u>따라</u> ----- ----- -----</p> |
| <p>제20조(징계) 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의원이 <u>제16조의 규정에 의한</u>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하거나, <u>제17조의 규정에 의한</u> 주의의무에 위반한 때에는 법 및 「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」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.</p> | <p>제20조(징계) ----- ----- <u>제16조에 따른</u> ----- ----- ----- <u>제17조에 따른</u> ----- -----</p> |

관계법령 발췌

□ 지방자치법

- 제41조(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) ①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·도에서는 10일의 범위에서, 시·군 및 자치구에서는 7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고,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의 조사를 발의할 때에는 이유를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,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가 있어야 한다.
- ③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시·도의 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시·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 외에는 그 감사를 각각 해당 시·도의회와 시·군 및 자치구의회가 할 수 있다. 이 경우 국회와 시·도의회는 그 감사결과에 대하여 그 지방의회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.
- ④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.
- ⑤ 제4항에 따른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으며, 제4항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.
- ⑥ 제5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절차는 제27조를 따른다.
- ⑦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「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」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, 제4항과 제5항의 선서·증언·감정 등에 관한 절차는 「국회에서의 증언·감정 등에 관한 법률」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□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

제5조(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)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충청북도 <개정 97.11.28>
 2. 법 제113조 내지 제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령 또는 충청북도조례로 설치한 충청북도의 직속기관, 사업소 <개정 2003.8.29, 2008.1.1>
 3. 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교육·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 다만, 그 감사 또는 조사는 교육위원회가 실시하고 의회에의 보고로 갈음하되, 의회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는 경우 특정사안에 대하여 감사 또는 조사를 할 수 있다. <개정 97.11.28, 2008.1.1>
 4. 충청북도가 설치한 법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기업 <개정 94.10.14, 2008.1.1>
 5. 법 제104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(지방자치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다)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. 다만,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한다. <개정 2008.1.1>
 6. 「지방공기업법」 제77조의3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·지방공단외의 출자·출연법인 중 충청북도가 4분의 1 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. 다만,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충청북도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, 회계, 재산에 한하여 실시한다. <신설 94.10.14>
- ② 삭제 <2004.12.31>

제10조(과태료의 부과기준) ① 법 제41조제5항 및 영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감사 또는 조사에 출석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. <신설 2004.12.31, 2008.1.1.>

② 제1항 과태료는 의장이 불출석 또는 증언거부 사실통보 등에 의하여 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가 부과 징수한다. 이 경우 의장의 통보서에는 증인에게 출석요구를 적법하게 이행한 사실과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거나 증언을 거부하였다는 입증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.

③ 도지사는 과태료를 부과 징수한 후 그 결과를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